

Policy and Law Report _Vol.17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2.6.~2.12.) -

February 14,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주 월요일에 발송되었던 뉴스레터는 고객여러분들에게 보다 누수없이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74호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의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3.2.8.~'23.3.9.까지 '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6개 과제 525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함 * 전체 신규과제중 금번 1차 공고한 과제의 총액이며, 이는 금번 공고과제 지원예산 416억원 대비 1.26배수 수준 금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22년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6억원 규모이며, 이중 계속예산은 8,370.3억원, 신규예산은 1,005.3억원으로 금번 공고는 신규예산 중 일부에 대한 1차 기획과제 공고임 패키지형 과제는 핵심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패키지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종기술융합형 과제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연계 융 복합 소재부품 개발,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상용화 개발을 지원함 '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의 주요 특징은 ①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 부품, 전기차 등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 ② 첨단반도체, 첨단바이오의약품, 6G, AAV(Advanced Air Vehicle, 미래형 첨단비행체) 등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을 지원하여 미래성장 역량 강화 ③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소부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 신규 공고 - (주요과제)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Cell to Pack 배터리시스템 등 기술개발 지원 - (기대효과) 장수명 및 저가격의 리튬인산철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상용전기차 및 ESS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現 양극소재 전량 수입), 미국 IRA에 대응한 중국산 내화세라믹 원료에 대한 공급망 이슈 대응, 차량용 배터리 냉각기술 고도화 및 공정 단순화를 통해 배터리팩 글로벌시장('25년 200조원 전망) 경쟁력 확보에 기여 ②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1개 과제, 194.9억원 신규 공고 - (주요과제) 2.5D/3D 패키지용 실리콘 기반 핵심 수동부품, 맞춤형 생체이식 및 인공생체모사체용 소재,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AAV용 통합 항공전자시스템 등 기술개발 지원	2023-02-07

부처	내용	일시
	- (기대효과) 고속반도체용 2.5D/3D 칩 패키지 소형화에 대응하는 원천기술 확보 및 반도체 수출경쟁력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세포배양소재의 공급부족 대응, 6G 이동통신 분야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및 수입대체, AAV용 항공전자시스템 핵심기술 확보로 방산수요 대응 및 항공 산업생태계 형성에 기여 ③ 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34개 과제, 196.3억원 신규 공고 - (주요과제) 폐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 친환경 제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풍력추진시스템, 수소전기차용 실링 및 서브 가스켓이 일체화된 프레임 가스켓 및 스택 등 기술개발 지원 - (기대효과) 국내 친환경 마그네슘 제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략핵심소재의 자립화(現 마그네슘 원소재 전량수입),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의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스택 생산성 개선을 통해 수소전기차 저가화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②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③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④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2023-02-06

부처	내용	일시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확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함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 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 (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 (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 (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④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⑥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⑦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2023-02-06

부처	내용	일시
	<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절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부 장관 수립 ← 투트랙 수립 →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국토부장관 협의 추진 단계 01 -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 기반시설 확보·이주대책 수립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유형 등 제시 - 특별정비구역 지정원칙 등 구체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시장·군수 시도지사 협의 - 주민 제안 또는 시장·군수 직권 - 특별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등 타법상 개발계획 의제 - 특례 부여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추진 단계 02 - 통합심의로 절차 단축 - 통합개발을 위해 필요 시 특별정비구역 단일사업시행자 지정 개별 사업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장·군수 추진 단계 03 착공 사업시행자 추진 단계 0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2.8. 시행) 통합관리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유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또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종전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등) * 가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023-02-08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2.7. 시행) 창업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해당 개인사업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로 명확하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41조제1항 등)	2023-02-0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 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 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 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에 입주가 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12, 13, 안 제26조의8, 안 제36조의4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2/6(월)~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2023- 02-06
공정거래 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 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 을 상향(50%→70%)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 (안 제19조의3) -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 자체장에 위임함 ②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2]) - 범위만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 하게 될 우려 존재 -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2023- 02-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2/6(월)~3/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동 개정 내용을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IV. 3. 가.) -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임 - 이에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도 동일하게 상향 ※ 의견 제시기간 : 2023/2/6(월)~3/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2023-02-06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3.1.3. 공포, '23.7.4. 시행)됨. 이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 등의 평가 기준(법 제31조의2제1항)’,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3제3항)’,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절차 등(법 제31조의4)’, ‘평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법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6)’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3 신설) ②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신설)	2023-02-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조사착수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등의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의4 신설) - 국가 등에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안 제14조의5 신설) - 표본조사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의6 신설) ③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안 제14조의7 신설) - 평가기관이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특허청장이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 등록 제외 가능 사유 및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사유를 규정함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의8 신설) ⑤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 (별표 7 개정) ⑥ 과태료 부과 기준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별표 11 개정) ⑦ 용어 정비 및 위탁업무 추가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용어를 반영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 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안 제29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2/8(수)~3/23(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그 적용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3-02-06
정무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전자금융업자의 앱 서명키(앱 개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가 유출되어 유사 악성앱이 유포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앱 서명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침해사고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2023-02-0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2023-02-0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신설)	2023-02-0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은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3-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제3호 등)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u>」 현행법상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였으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 연장하여 12년간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매년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 소모가 누적되어 왔으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사업자 지정 해제는 현행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부작용을 유발하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한편,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가입자 점유율이 16%를 상회(1,200만명 이상)했으며,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이에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8조)	2023-02-07
	• 「<u>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채널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2023-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러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입법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0조 및 제108조)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u>」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2023-02-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2)	2023-02-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하는 이른바 ‘밀캠’·‘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2023-02-09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각 신설) ②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제4항 신설)	2023-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③ 관리기관은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제6항 신설) ④ 관리권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 및 중대재해원인조사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제7항 신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안 제45조제8항 신설) ⑥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종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제10항 신설)	
	• <u>「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의원 등 10인)」</u>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 · 소프트웨어 · 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 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 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2023-0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 (안 제2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③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6조) ④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⑤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 (안 제15조부터 제17조)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9조) ⑧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2023-0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되어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구체화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②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함 (안 제9조제4항) ③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8항) ④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⑤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2023-01-30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2023-02-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 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의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서 자연재해는 근로환경·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있어 그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연재해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제12호의2·제12호의3 신설 등)	2023-0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1인)」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인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독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호아목 신설)	2023-02-06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2023-02-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u>」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안 제 24조의2)	2023-02-10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2/13(월) 10: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14(화) 10: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2/16(목)	「현안, 외국에선?」 제53호 발간 -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예산정책처	2/17(금) 10:00	「제18회 NABO 포럼」 개최 - 시대의 흐름, 자산관리 그리고 국가정책	비대면 화상회의
입법조사처	2/15(수) 13:30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국내 노인 통합 돌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의원회관 2소회의실
미래연구원	2/15(수) 10: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자 차담회 개최 - 연금제도 개혁	도서관 1층

[별첨1] 제403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2/15(수) 10:00	전체회의	- 고유법 상정, 법무부 등 소관 업무보고
	2/16(목) 10:00	전체회의	- 타위법 심사
기재위	2/14(화) 11:00	전체회의	- 소위원장 개선의 건, 법안 상정
	2/14(화) 14: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2/15(수)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2/15(수) 16: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교육위	2/16(목) 10:00	전체회의	- 소위원장 선출의 건, 법안 의결 및 상정, 교육부 등 업무보고
과방위	2/13(월) 14: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14(화) 14:00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2/15(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등 상정, 업무보고
	2/15(수) 14: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국방위	2/17(금) 09:30	전체회의	- 국방부 등 소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산자중기위	2/13(월) 14:00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2/14(화) 14:00	청원소위	- 청원 심사
	2/16(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복지위	2/13(월) 11:00	제1법안소위	- 법안 심사
	2/14(화) 11:00	제2법안소위	- 법안 심사
환노위	2/14(화) 14:00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15(수) 10:00	예결소위	- 예타조사 면제 동의를 건
	2/15(수) 14:00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2/14(화) 11: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15(수) 14: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2/16(목)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2/17(금)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2/14(화) 14: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정개특위	2/15(수) 14:00	국회선진화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13(월) 08:00	왜 한국에겐 반도체 산업인가? 무엇을 해야하나?	양향자·박성민·조응천, 조정훈·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2/13(월) 09:30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노웅래·박대수 의원실, 환경부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3(월) 14:00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미향·위성곤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4(화) 14:00	도산 안창호 - 美 洲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배현진 의원실,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5(수) 08:00	제2회 중국의 경제전략 및 한중경제 전망 -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홍영표·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2/15(수) 14:00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안성시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5(수) 15:00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류호정·김승수 의원실, 한국만화가협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16(목) 09:30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민홍철·임호선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17(금) 10:00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서범수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7(금) 14:00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민병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의원회관 1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4호 발간 -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2/9(목)	「현안, 외국에선?」 제52호 발간 -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	
입법조사처	2/6(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미래연구원	2/6(월)	「Futures Brief」 제23-02호 발간 -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7(화) 10:00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특화단지 조성 포럼	양금희 의원실, 대구광역시	의원회관 3세미나실
2/7(화) 14:00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박대출 의원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	의원회관 3세미나실
2/7(화) 14:00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이은주·심상정·우원식· 이학영·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2/7(화) 15:00	제1회 중국의 정치체제 -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홍영표·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9(목) 14:00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송재호·조오섭 의원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